

후대교배종 콩 MON 87705 x MON 89788

1. 법적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 제12조 3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4조, 제4-9조

2. 후대교배종 위해성 심사현황

	모품종 1	모품종 2
Event 명	MON 87705	MON 89788
특성	올레산 함량 증가 및 포화지방산 감소	제초제 내성
심사완료일		

3. 심사경위

- '08.1.1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수입 또는 생산 LMO는 반드시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함. 다만, 이미 환경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간 인공교배에 의해 육종된 후대교배종은 상호작용 유무, 후대교배종의 특성 등을 검토함.
- '12.11.13일 LMO 환경위해성 심사 접수 및 심사 진행

4. 심사결과

- Southern blot 결과로부터 단일 이벤트의 유전자들이 각각 안정적으로 후대교배종 MON 87705×MON 89788에 유전됨이 확인되었고, 2개의 *cp4 epsps* 유전자가 집적되어 발현되는 CP4 EPSPS 단백질의 양은 양친의 합과 유사하며, FAD2-1A 및 FATB1-A 유전자 억제 카세트에 의해서 변화된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및 리놀레산(linoleic acid)의 수준도 해당 모본과 대체로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상호작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대한 내성 실험에 있어서도 단일 이벤트와 유사하여 삽입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기타 성분분석이나 작물학적 특성평가결과에 있어서도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도입유전자들간에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